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24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박호근 의원(찬성자 29명)
- 나. 제안일 : 2017년 6월 30일
- 다. 회부일 : 2017년 7월 24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호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제7조).
-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17.7.7.~2017.7.14)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제7조제2항 신설),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안제9조의 2)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민간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 등은 74개이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2015년 14개, 2016년 18개, 2017년 9개 (8월 기준))과 같음.

〈최근 3년간 공유기업 지정 현황〉

연도	연번	단체(기업)명	공유내용	비고
2017 년	1	(주)데이그래피	인테리어 벽화 플랫폼 구축하여 청년 예술가와 자영업자를 연결(재능공유), 신촌기차역 앞 청년커뮤니티 공간 공유	
	2	(주)에스폼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각종 문서서식 공유	
	3	쉐어잇(주)	학교 미사용 시간대 생활체육인이 학교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4	(주)두꺼비하우징	빈 주택을 리모델링후 셰어하우스로 활용 등	
	5	아트립	서울내 공유숙박지를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및 페어공간으로 활용	
	6	(주)프렌트립	소셜 액티비티 공유 플랫폼 '프립'을 활용하여 사람과 장소를 연결	
	7	(주)한국주차공유서비스	주택 및 건물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공간을 공유	
	8	꿈꾸는 다락방	벼룩시장을 활용한 물품 및 보드게임 공유, 은평대학을 통한 재능 및 교육프로그램 공유	
	9	파릇한 절문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텃밭을 조성하고 생산물 등을 공유	
2016 년	1	리베라빗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가구와 생활용품을 공유	
	2	어픽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을 공유	
	3	아이랑놀기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전문가와 초보엄마를 연결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도시민박업주와 외국인관광객을 연결	
	5	선렵건축사사무소	빈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유	
	6	원바이트	셰어하우스 공간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	

	7	세븐픽처스	예술작가와 카페를 연결하여 전시회 개최	
	8	동네발전소협동조합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음식점, 회의장 등 공유	
	9	지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대체숙박업 등 공유	
	10	라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 등 중고물품 대여 중개	
	11	루아흐	코워킹 공간을 창업가, 예비창업가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	
	12	플래니토니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학교재를 학생 간 공유	
	13	히든북	공원, 광장 등 유휴공간 활용하여 돛자리 도서관 개최	
	14	다날쏘시오	각종 생활용품 개인간 대여 서비스	
	15	허밍비	시니어의 재능공유를 통해 상품 판매 및 소셜다이닝 추진	
	16	팀스퀘어	비즈니스 기회, 프로젝트 기회 등 연결	
	17	씨엘인포넷	아이아웃, 아이책 등 아이용품 직거래 사이트 운영	
	18	대안영사문화발전소 아이공	대안 예술가 들을 위한 미디어아트 공간 공유 및 영상 콘텐츠 공유	
2015 년	1	홍합밸리	공간 및 아이디어 교류의 장 제공	
	2	상상우리	코워킹 공간, (예비)은퇴자들 멘토링	
	3	리싸이클씨티	재활용 예술작가들에게 재활용품, 작품활동 공간 공유	
	4	오투잡	디자인, 번역, 상담 등 개인의 재능 공유	
	5	꿈꾸는 도토리	육아 관련 물품, 도서 공유	
	6	버스킹티비	공연시설 개방	
	7	달려라 피아노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 기증받아 복지시설 등에 재기증	
	8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들과 문자공유를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	
	9	씨네에그	영화와 공간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10	이노온	주차장 공유	
	11	헤드플로	오픈칼리지를 통한 공간 및 재능공유	
	12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시각장애인들과 도서 공유	
	13	링고플라이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모국어 재능 공유	
	14	재능넷	디자인, 번역, 상담 등 개인의 재능 공유	

가. 자치구의 공유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자치구와의 협력)</u></p> <p>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u></p> <p>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은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동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조례에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p><u>제23조(보조금의 교부)</u>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p>

- 다만, 지원범위를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 내용이 불명확한바, 불필요한 지원의 요구 및 확대 여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명확화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제2항은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바,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수 공유 참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u>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은 2014년 1월 동 조례 제9조의2의 신설이후에 한 번도 우수 공유 참여자를 지정한 바가 없다는 점, 둘째, ‘우수 공유 참여자’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점, 셋째, 동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우수 공유 참여자로 지정이 되어도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점, 넷째,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마치 사업비가 아닌 포상금의 성격은 아닌지 불분명한 점, 다섯째, 법령상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구와의 협력)”을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치구와의 협력)</p> <p>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p> <p>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